

##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2. 1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1998. 12. 14

○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1998. 12. 14)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 가. 제안이유

○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고부가가치 전략문화산업인 만화산업을 우리 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민간 공동출자로 부천시만화산업법인을 설립하여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부족한 기획·창작력 개발로 만화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법인격 및 명칭(안 제2조)

- 법인격 :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 명 칭 : 정관으로 정함

○ 자본금(안 제4조)

- 수권자본금 : 40억원
- 설립자본금 :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 시 출자금 :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

○ 사업(안 제5조)

- 출판 만화사업
- 캐릭터 창출사업
- 만화와 관련된 경영사업

- 사이버 만화대학 운영사업
- 만화정보제공 및 사이버 쇼핑몰사업
- 법인의 경영평가(안 제11조)
  - 필요시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
- 보고 및 감사(안 제12조)
  - 법인에 대하여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하여 감사와 행정지도 가능
  - 시장은 감사결과를 시의회에 제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수전자본금이란 무엇이죠?	○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의 자본금입니다.
○ 상급기관에서의 만화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반응은 좋습니다.
○ 출자비율이 우리 시가 40%인데 경영권 획득은 가능합니까?	○ 출자비율을 51% 이상 획득시 3인 이상으로 발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만화산업 추진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까?	○ 올해 7월초부터 추진해왔으며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설립계획안을 보면 추정손익계산이 나오는데 과대포장한 것은 아닙니까?	○ 최소한의 인원으로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의안번호	제 78 호
의결년월일	98. 12. 26 (제67회)

제출년월일 : 1998. 11.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고부가가치 전략문화산업인 만화산업을 우리 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민간 공동출자로 부천시만화산업법인을 설립하여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부족한 기획·창작력 개발로 만화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인격 및 명칭(안 제2조)
  - 법인격 :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 명 칭 : 정관으로 정함
- 자본금(안 제4조)
  - 수권자본금 : 40억원
  - 설립자본금 :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 시 출자금 :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
- 사업(안 제5조)
  - 출판 만화사업
  - 캐릭터 창출사업
  - 만화와 관련된 경영사업
  - 사이버 만화대학 운영사업
  - 만화정보제공 및 사이버 쇼핑물사업
- 법인의 경영평가(안 제11조)
  - 필요시 법인의 경영진반에 대하여 평가
- 보고 및 감사(안 제12조)
  - 법인에 대하여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하여 감사와 행정지도 가능
  - 시장은 검사결과를 시의회에 제출

□ 제정조례안 : 불입

###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천시만화산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법인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①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법인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 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출판 만화사업
2. 캐릭터 창출사업
3. 만화와 관련된 경영사업
4. 사이버 만화대학 운영사업
5. 만화정보제공 및 사이버 쇼핑몰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정관) ①법인의 설립과 목적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2. 공고에 관한 사항
-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시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출과 책무)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9조(사업년도) 법인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경영평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시장은 법인에 대하여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적절할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법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